국민신문고 - 나의민원 인쇄

처리기관	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		
담당자(연락처)	권순태 (070-4352-6208)	민원인 신청번호	1AA-1212-009364
접수일	2012.12.04. 14:55:45	처리기관 접수번호	2AA-1212-022257
처리예정일	2012.12.11. 23:59:59		
※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(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			

1차 답변일	2012.12.04. 20:18:26
처리결과 (1차 답변내용)	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. ㅇ 위촉연구원 등 근로자의 복지후생비(경조사비) 지급 여부나 재원조달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 다만,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 *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번,<고용보험 1, 근로기준 2>, 담당 권순태)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첨부파일	첨부파일 없음